

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(안)

◇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I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
□ 추진근거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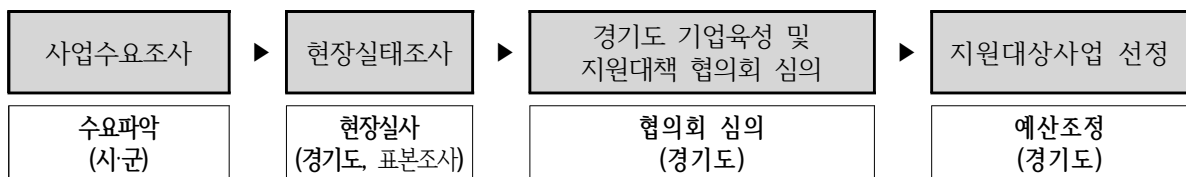
◆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9조(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), 제11조(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)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「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」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기간 : 2020년 1월~12월

□ 사업내용

- 기반시설 개선사업 :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- 근로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
-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: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
-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

□ 선정기준 : 사업분야별 심사표(참고1)

□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별 차등보조율 적용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□ 사업주체 : 시·군

II

사업별 지원기준

1] 기반시설 개선사업
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중·소기업 밀집지역
- 지원내용 : 도로 확·포장, 상·하수도, 소교량, 보안등, 공동 안내 표지판, 우수관 정비, 공용 주차장, 보행로 정비, 교통신호등 설치 등
- 재원비율 : 2020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(도비 10%~50%, 시·군비 50~90%)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200백만원 이내
- 지원기준 :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, 시·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
- 지원우대
 -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
 -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를 완료된 사업
 -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·군 사업
 -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 -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¹⁾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 -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- 제외대상
 -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 -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(당초 시·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)
 -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
 -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2] 근로환경 개선사업
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
- 지원내용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, 휴게공간 설치 및 개·보수, 기숙사 건축, ~~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2)~~
 - 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
 - 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
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《 기숙사 건축 지원 내용 》

- 지원대상 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
 -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
- 제외대상 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
- 재원비율 : 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군비 30% 자부담 40%)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
《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》

- 지원대상 : ~~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(수해기업 5개사 이상)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~~
(밀집된 기업 및 운영협의회에서 구성된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)
 - ※ 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 ‘산업단지 통근버스운행 지정고시’를 득한 사업
- 제외대상 : 수해기업이 5개사 미만인 경우
- 재원비율 : ~~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군비 30% 자부담 40%)~~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-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 - ※ 종업원 수³⁾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2)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‘J-BUS 운영 사업’ 으로 통합

3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○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- 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- 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-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총당 조건)

○ 지원요건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폐업체 제외)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
○ 지원우대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⁴⁾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-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⁵⁾,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○ 제외대상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- ~~- ※ 단,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의 경우, 연도별 사업신청 및 협약을 통해 지원 가능~~

4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5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

③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

- 지원대상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- 지원내용 : 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,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·보수,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등
 -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-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 -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- 지원요건
 -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 -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 이상 사업
 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- 제외대상
 -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 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 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를 불가능한 사업
 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4] **작업환경 개선사업**
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
- 지원내용 : 작업 공간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, LED조명 설치(작업공간만 해당),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)
-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 - ※ 종업원 수⁶⁾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 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 - 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 -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- 지원요건
 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
 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 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- 지원우대
 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 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 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 -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 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- 제외대상
 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 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 - 사업 착수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 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 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 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6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□ 사업선정 시 유의사항(시·군)

-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조사 철저
 - 사업계획서 미흡 시, 선정심의 상정 불가
 - 허위 사업계획서 적발 시, 기업SOS지원단 운영 관련 패널티 적용
 - 사업별 심사점수에 따른 시·군 우선순위 선정(선정심의 반영)
-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
 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m² 이상일 경우)
 - 도로 확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사용 동의
 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율, 건축물 용도
 - ~~통근버스 운행 관련 ① 산업단지의 경우, 경기도 고사 가능 여부~~
 - ~~② 공장밀집지역의 경우, 운영협의회 협약(노선, 운행횟수 등) 사전 이행~~
- 개별업체의 사업분야별(기반, 근로, 지식, 작업) 중복 지원 불가
- 시·군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
 - 시·군 추경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이월 방지,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준수
 - 기업체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포기 발생 방지
-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
 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확인
 - 집행 시 시·군 담당자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
 -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, 구체적인 사유 명시하여 도 신고 (기업 사정으로 인한 포기,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포기 등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 승인 불가)
 - 지원내용의 세부 수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 없이 변경 가능

□ 사업신청 제출서류

-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(서식1)
- 시군별 신청사업 총괄표(서식2)
- 시군별 신청사업 심사점수표(서식3) ※ 사업분야별 심사기준(참고1) 참고

IV

향후계획

- 2019년 7월~9월 : 2020년 사업 수요조사(시·군)
- 2019년 10월 : 2020년 사업 현장실태조사(도, 표본조사)
- 2019년 12월 : ‘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’ 선정 심의
- 2020년 1월 : 2020년 사업 사업비 교부